

제2563호
2018. 01.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규 칙
 - 제2018-6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2
- 고 시
 - 제2018-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고 18
 - 제2018-6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9
 - 제2018-7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0
- 공 고
 - 제2018-7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제2018-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22
 - 제2018-8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 제2018-8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규 칙

●서울특별시중구 공포 제 2018-69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난 : 별표4
- 2. 사회재난 : 별표5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 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p>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p> <p>(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 정보 파악</p> <p>(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p> <p>(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p> <p>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p> <p>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p> <p>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p> <p>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p> <p>자) TV 방송 모니터링</p> <p>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p>
	<p>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p>	<p>가) 대책본부회의 개최</p> <p>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p> <p>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p> <p>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p> <p>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p> <p>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p> <p>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p> <p>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p> <p>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p> <p>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p> <p>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p> <p>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p> <p>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p>4) 행정지원팀</p>	<p>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p>
<p>나. 협업 가능반</p>	<p>1) 긴급생활안정지원반</p>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p> <p>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p> <p>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p> <p>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p> <p>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p> <p>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p>2) 재난현장환경정비반</p>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p> <p>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p> <p>라) 복구현황 파악</p>
	<p>3) 긴급통신지원반</p>	<p>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p> <p>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p> <p>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p> <p>라) 복구현황 파악</p>

<p>4) 시설피해응급복구반</p>	<p>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p>
<p>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p>	<p>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p>
<p>6) 재난수습홍보반</p>	<p>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p>
<p>7) 재난관리자원 지원 반</p>	<p>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p>
<p>8) 교통대책반</p>	<p>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p>9) 의료·방역서비스지 원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p>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p>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전지원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전산정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시장경제과
9. 산업통상자원부	1. 가. 가스 공급 및 누출 사고 2. 나. 원유 공급 사고 3.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라. 전력 사고 5.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환경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6.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7.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8.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0. 마. 황사	환경과
12. 고용노동부	11.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취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12.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13.나. 고속철도 사고 14.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15.라. 도로터널 사고 16.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17.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18.사. 지하철 사고	도로시설과 - - 도로시설과 - 교통행정과 -

	19.아. 항공기 사고 20.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21.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22.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3.나. 조수(潮水) 24.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5.라. 해양 선박 사고	-
15. 행정안전부	26.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7.나. 화재·위험물 사고 28.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29.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30.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31.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도로시설과 32. 안전치수과 - 안전치수과 안전치수과 33. 34. -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8. 문화재청	35.가. 문화재 시설 사고	건축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치수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관(β)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반	· 복지지원과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 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 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 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 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황관리 총괄 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치수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 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 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 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7+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피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3537부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4 및 별표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중구비상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중구 비상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실무반 편성(안 제4조)
- 다. 수습 주관부서 지정(안 제5조)
- 라. 사무 전결사항(안 제6조)
- 마.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안 제7조)

고 시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5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① 일반명단 A4용지 제공 : A4용지 1매 기준 60원 ② 라벨용명단 제공 : 라벨용지 1매 기준 195원	전산자료 복사본 CD 제공 : (490원×디스크 개수)+(30원×면수)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9-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4	2018.01.31.	동호로1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 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39-1	2018.01.31.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39-2	2018.01.31.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41	2018.01.31.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41-3	2018.01.31.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41-5	2018.01.31.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7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1. 개정이유

- 우리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센터(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중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전화:3396-5392, FAX: 3396-8736, 메일:sj493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복지지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3. 지역조직화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영양보호
	남산실버복지센터	동호로5길 189 (신당동)	
	신당데이케어센터	다산로25길 6 (신당동)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복지지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복지지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3. 지역조직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3. 지역조직화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동호로5길 189 (신당동) 다산로25길 6 (신당동)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동호로5길 189 (신당동) 다산로25길 6 (신당동)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세종대로2길 15, 4층 (남대문로5가)	1.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9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 시행에 따른 6급이하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지적재조사, 지하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담당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 1)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조례안 제2조)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1,211명 → 1,229명(증 18)
 - 집행기관의 정원 : 1,186명 → 1,204명(증 18)
-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조정(조례안 별표2)
-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별표3)

나.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

- 1) 2018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필요한 정원 증원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 증원
- 2) 일자리정책 추진 지자체 역할, 기능확대 등에 대비한 필수인력 보강
 - 사무운영9급 1명(감축) → 행정8급 1명(증원)
- 3) 국가시책사업(지적재조사사업) 및 구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확충
 - 사무운영9급 2명(감축) → 지적8급 1명(증원), 건축8급 1명(증원)
- 4) '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 확보
 - 시설관리7급 2명(감축) → 토목7급 1명(증원), 토목8급 1명(증원)
- 5)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 농림운영(월예) 7급 1명(감축) → 녹지8급 1명(증원)
- 6) 사진촬영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 조정
 - 임기제지방행정(사진촬영) 9급 1명(감축) → 임기제지방행정(사진촬영) 8급 1명(증원)
- 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찾동 팀신설에 따른 6급 팀장 재배치(851명 ⇒ 845명)
 - 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직 순증 및 6급 팀장 재배치(234명 ⇒ 258명)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 중 “1,211명”을 “1,2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86명”을 “1,204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비 고 : 등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22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1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5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11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186명</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5명</p> <p>[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p> <p><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 문 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1% 이내</td> <td>7% 이내</td> <td>22% 이내</td> <td>31% 이내</td> <td>32% 이내</td> <td>6% 이상</td> <td>1% 이내</td> </tr> </tbody>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별표 3] (제4조 관련)</p> <p><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의 회 사무과</th> <th rowspan="2">직 속 기 관</th> <th rowspan="2">동</th> </tr> <tr> <th>총 계</th> <th>본 청</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colspan="2">1,2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colspan="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 colspan="2">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colspan="2">1,2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 colspan="2">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colspan="2">6</td> <td>5</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 colspan="2">58</td> <td>30</td> <td>1</td> <td>12</td> <td>15</td> <td></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 colspan="2">1,13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 colspan="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colspan="2">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 colspan="2">3</td> <td>1</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 colspan="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이내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본 청	총 계	1,21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03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36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29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204명</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5명</p> <p>[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p> <p><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 문 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1% 이내</td> <td>32% 이내</td> <td>32% 이내</td> <td>7% 이상</td> <td>1% 이내</td> </tr> </tbody>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별표 3] (제4조 관련)</p> <p><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의 회 사무과</th> <th rowspan="2">직 속 기 관</th> <th rowspan="2">동</th> </tr> <tr> <th>총 계</th> <th>본 청</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colspan="2">1,22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colspan="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 colspan="2">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colspan="2">1,2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 colspan="2">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colspan="2">6</td> <td>5</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 colspan="2">58</td> <td>30</td> <td>1</td> <td>12</td> <td>15</td> <td></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 colspan="2">1,15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 colspan="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colspan="2">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 colspan="2">3</td> <td>1</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 colspan="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본 청	총 계	1,22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1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5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이내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본 청																																																																																																																																																																																																																																																											
총 계	1,21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03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36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본 청																																																																																																																																																																																																																																																											
총 계	1,22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21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5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29	845	25	101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21	841	21	101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28	160	3	19	46
행정		151	101	3	8	39
세무		14	14			
사회복지		7	3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위생		0	0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0	0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9	275	9	31	54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6	7		1	8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7	7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1	1			
8급 소계		349	258	2	28	61
행정		192	141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23	6			17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6	6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9, 건축11, 지적7, 교통시설1)		38	3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208	110	6	10	82
행정		50	20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41	11			30
전산		2	1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38	18	2	3	1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3	4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 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 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51	25	101	234	총 계		1,229	845	25	101	25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47	21	101	234	일반직 계		1,221	841	21	101	258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계		228	166	3	19	40	6급 소계		228	160	3	19	46
행정		151	106	3	8	34	행정		151	101	3	8	39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7	4			3	사회복지		7	3			4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의료		2			2		보건의료		2			2	
위생		0	0				위생		0	0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0	0				전기운영(전기)		0	0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계		370	277	9	31	53	7급 소계		369	275	9	31	54
행정		215	155	6	8	46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사회복지		16	7		1	8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8	3		5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도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7	37				시설(도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7	7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1	1			
8급 소계		342	252	2	28	60	8급 소계		349	258	2	28	61
행정		190	139	2	5	44	행정		192	141	2	5	44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22	6			16	사회복지		23	6			17
전산		7	7				전산		7	7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녹지		6	6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도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시설(도목19, 건축11, 지적7, 교통시설1)		38	38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0	0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6	114	6	10	66	9급 소계		208	110	6	10	82
행정		51	21	2		28	행정		50	20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25	11			14	사회복지		41	11			30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7	6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38	18	2	3	15	운전		38	18	2	3	15
전기운영(전기)		4	4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6	7		1	8	사무운영(워드)		13	4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8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길고양이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훼손으로 미관 저해 및 일부 다양한 용기 사용으로 인해 야간 수거작업시 능를 저하 등의 사유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무상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 (제12조제4항)
 - (제4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제18조제2항)
 -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청소 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63, FAX:3396-8750, 메일:silver8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 ③ (생략)</p> <p>④ (신설)</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생략)</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8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상의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조항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며 화장실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민간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시스템 구축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변경
 - (변경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를
 - (변경후)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여관동), 문의전화 : 3396-5472, FAX : 3396-8756, 메일 : ysun7570@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를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